

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신동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9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5월 26일  
발 의 자: 신동원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길영,  
김태수, 남궁역, 신복자,  
이성배, 이종환, 이효진,  
홍국표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,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.
-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, 출석요구서의 송달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,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(안 제85조의2 신설)
- 나. 윤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 절차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함(안 제87조제1항)

#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의2(회의 개최 통지)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, 위원장 및 의원
2.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

제8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최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